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15일

조례 제1614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를 “제1항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다른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따르고,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

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5호 중 “때”를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제2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

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②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5”를 “10”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친절·공정)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연간일수</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u>3개월 이상 6개월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3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6개월 이상 1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6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1년 이상 2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9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2년 이상 3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2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3년 이상 4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4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4년 이상 5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7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5년 이상 6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20일</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6년 이상</u></td><td style="text-align: center;"><u>21일</u></td></tr> </tbody> </table> <p>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p>	재직기간	연간일수	<u>3개월 이상 6개월 미만</u>	<u>3일</u>	<u>6개월 이상 1년 미만</u>	<u>6일</u>	<u>1년 이상 2년 미만</u>	<u>9일</u>	<u>2년 이상 3년 미만</u>	<u>12일</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4일</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7일</u>	<u>5년 이상 6년 미만</u>	<u>20일</u>	<u>6년 이상</u>	<u>21일</u>	<p>제6조(친절·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할 때 -----                      -----.</p> <p>제15조(연가일수) ① <u>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u>1개월 이상 1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1</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1년 이상 2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2</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2년 이상 3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4</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3년 이상 4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5</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4년 이상 5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17</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5년 이상 6년 미만</u></td><td style="text-align: center;"><u>20</u></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u>6년 이상</u></td><td style="text-align: center;"><u>21</u></td></tr> </tbody> </table> <p>② 제1항 중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                      ----- 따르고,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p>	재직기간	연가일수	<u>1개월 이상 1년 미만</u>	<u>11</u>	<u>1년 이상 2년 미만</u>	<u>12</u>	<u>2년 이상 3년 미만</u>	<u>14</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5</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7</u>	<u>5년 이상 6년 미만</u>	<u>20</u>	<u>6년 이상</u>	<u>21</u>
재직기간	연간일수																																		
<u>3개월 이상 6개월 미만</u>	<u>3일</u>																																		
<u>6개월 이상 1년 미만</u>	<u>6일</u>																																		
<u>1년 이상 2년 미만</u>	<u>9일</u>																																		
<u>2년 이상 3년 미만</u>	<u>12일</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4일</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7일</u>																																		
<u>5년 이상 6년 미만</u>	<u>20일</u>																																		
<u>6년 이상</u>	<u>21일</u>																																		
재직기간	연가일수																																		
<u>1개월 이상 1년 미만</u>	<u>11</u>																																		
<u>1년 이상 2년 미만</u>	<u>12</u>																																		
<u>2년 이상 3년 미만</u>	<u>14</u>																																		
<u>3년 이상 4년 미만</u>	<u>15</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7</u>																																		
<u>5년 이상 6년 미만</u>	<u>20</u>																																		
<u>6년 이상</u>	<u>21</u>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 3. (생략)

③ (생략)

<신설>

-----  
-----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채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신 설>

제15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 일수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생략)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  
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  
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  
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  
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  
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  
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  
-----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12월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폐쇄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④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략)

<신설>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⑥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가) -----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 10. (현행과 같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총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⑤·⑥ (생략)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2. (생략)

⑧·⑨ (생략)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5일 -----  
-----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1.·2.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신 설>

<신 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생략)

<신 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생략)	-
	-	-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현행과	같음
	-	-



출산	배우자	<u>5</u>
입양	-	-
사망	-	-
	-	
	-	
	-	
	-	
탈상	-	

비고: (생략)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	-
사망	-	-
	-	-
	-	-
	-	-
	-	-
탈상	-	-

비고: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15일

조례 제1615호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前]

【별지 제1호서식】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제13조제5항 관련)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골목상권 이용실적(음식점 등 서비스업 포함)

이용금액 (합계)	이용 업소 상호명	비고

영수증

영수증 부착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신청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수정 後]

【별지 제1호서식】

## 골목상권 상가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위 임 장 (※ 대리 신청시 작성)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 인센티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열람 등 포함)

년 월 일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대리 신청 시 위임자 도장 날인 (서명 불가)			

## □ 골목상권 이용실적

이용금액 (합계)	이용업소 상호명 (대표 가맹점만 기입)	※ 해당 사항에 V 표시		
		주소지가맹점	음점가맹점	관내가맹점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 허위로 신청 시 상품권 회수 조치

## 영 수 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열람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골목상권 상가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확인

( )읍·면·동 (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수정 前]

【별지 제2호서식】

## 시 소유 시설물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제13조제5항 관련)

###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시설물 이용내역

이용금액 (합계)	이용시설	이용내역	비고
			이용내역 예시) - 입장권 구입 - 수영 수강신청

### 영수증

입장권이나 영수증 부착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신청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수정 後]

【별지 제2호서식】

## 시 소유 시설물 이용 인센티브 신청서

###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시설물 이용내역

이용금액 (합계)	이용시설	이용내역	비고
			이용내역 예시) - 입장권 구입 - 수영 수강신청

### 영수증

입장권이나 영수증 부착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신청자 (인)

## 군 산 시 장 귀하

상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는 군산시 소유 시설물 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 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⑥ (생 략) <u>&lt;신 설&gt;</u></p>	<p>제13조(상품권 활성화시책)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행사 개최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19년 3월 15일

조례 제1616호

##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아래와 같다.

1. 명 칭: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하“역사관”이라 한다)
2. 위 치: 군산시 금광동 165-8번지 외 1필지
3. 기 능: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 전시, 교육 및 홍보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7. “소장품”이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 제2장 관람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1호, 2호 휴관일 이외에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역사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의 전시물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역사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유물, 자료의 기증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8.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유아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공공질서·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11조 (운영·위탁관리)

- ① 역사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민간위탁은 유물 기증자, 기탁자 등이 소속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③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 충당을 위해 수탁자는 관람료 징수가 가능하다. 다만, 운영비를 초과하는 관람료 수입은 정산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시설물관리)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역사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역사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장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

합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시장과 역사관담당국장, 역사관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군산관련 역사, 문화, 고고학, 민속학, 근대역사문화 전문가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문화계·지역인사
3.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역사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역사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시품의 기증, 구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

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역사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제23조(위원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유물의 취득 및 관리 등

제24조(유물의 감정) ① 시장은 역사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감정위원회는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전문위원, 역사학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따라 준용한다.
-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유물의 구입과 기증 등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 전시,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감정위원회가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6조(소장품 대여) ① 소장품은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및 전시 공간
2. 상호 교환 전시의 경우 국립, 공립, 대학 역사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관 랑 료 (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700	
청소년,군인	700	400	
어 린 이	500	300	

【별표 2】

관람료 감면 (제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 군산시민 관람료 감면 】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단위: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 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을 적용

◎ 군산시 공고 제2019-456호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2019년 7월)에 따른 조례의 정비
- 나. 장애인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 시행에 대비

2. 주요내용

- 가. 보호자의 정의에 관한 부분(안 제3조)
  - ☞ 【현행】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 나. 별표 1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의 체력단련실 사용료 비고란 개정
  - ☞ 【현행】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4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ngbee75@korea.kr

2) 주소 :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군산장애인체육관), 체육진흥과

3) 팩스 : 063-442-77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전화 : 063-454-59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1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의 2. 체력단련실 사용료 비고란의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보호자"란 <u>1급, 2급 장애인</u>과 <u>3급 중복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동행한 사람</u>을 말한다.</p> <p>7. ~ 10. (생략)</p> <p><b>【별표 1】</b>  <u>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u>  <u>사용료(제11조관련)</u></p> <p>1. (생략)</p> <p>2. 체력단련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사 용 료(원)</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1회/1일</th> <th>1개월</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무 료</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1, 2급장애인과 3 중 복 장애 인 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td> </tr> <tr> <td>어린이</td> <td>1,000</td> <td>20,000</td> </tr> <tr> <td>65세 이상 노인</td> <td></td> <td>0</td> </tr> <tr> <td>청소년</td> <td>1,500</td> <td>25,000</td> </tr> <tr> <td>성 인</td> <td>2,000</td> <td>30,000</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1, 2급장애인과 3 중 복 장애 인 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성 인	2,000	30,000	0	<p>제3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p> <p>7. ~ 10. (현행과 같음)</p> <p><b>【별표 1】</b>  <u>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시설</u>  <u>사용료(제11조관련)</u></p> <p>1. (현행과 같음)</p> <p>2. 체력단련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사 용 료(원)</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1회/1일</th> <th>1개월</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무 료</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td> </tr> <tr> <td>어린이</td> <td>1,000</td> <td>20,000</td> </tr> <tr> <td>65세 이상 노인</td> <td></td> <td>0</td> </tr> <tr> <td>청소년</td> <td>1,500</td> <td>25,000</td> </tr> <tr> <td>성 인</td> <td>2,000</td> <td>30,000</td> <td>0</td> </tr> </tbody> </table>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성 인	2,000	30,000	0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1, 2급장애인과 3 중 복 장애 인 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성 인	2,000	30,000	0																																												
구 분	사 용 료(원)		비 고																																												
	1회/1일	1개월																																													
장애인	무 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무료																																												
어린이	1,000	20,000																																													
65세 이상 노인		0																																													
청소년	1,500	25,000																																													
성 인	2,000	30,000	0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 2019-530호

##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 군 산 시 장

####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산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2조)
- 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4조)
- 다. 보험료 납입방법 및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6조)
- 라. 보험금 신청, 보험금 지급 및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9조)

#### 3. 의견제출

-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 063-454-3844, FAX : 063-454-3829)
- 전자우편 : ojhboy2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전화 063-454-3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 붙임

군산시조례 제 호

###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 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 2019 - 531호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 군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의무 (안 제10조)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조항이동)으로 “영 제85조의 3”을 “영 제85조의 4”로 변경함(안 제10조)

####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kmino2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 을 “영 제85조의4”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0조(신고의무) ① -----          --- 영 제85조의4-----          -----.</p> <p>②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 2019 - 532호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 군 산 시 장

#### 1. 개정이유

-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현재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지원유지와 범시행 이후 시각장애 4급에 상응하는 기준 마련
- 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8년 12월)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일부 사항을 감면조례에 추가하여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2019. 7. 1.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중/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각 자치단체별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통일함.(안 제2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본 감면에 대한 감면근거 법조항의 제호를 수정하고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함
- 감면일몰기한 연장 (2020년 12월 31일)
- 감면기한이 종료된 각호를 삭제함

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만금지구 등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전 취득 재산에 대하여도 감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 7년 감면(5년 100%, 그다음 2년 50%) ⇨ 15년 100% 감면

라. 자구수정(안 제8조)

- 본 조의 “감면율” 을 “경감률” 로 자구 수정함

3. 의견제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kmino2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전화 063-454-2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을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제4항 및” 을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으로, “부분” 을 “본문” 으로, “감면 기간” 을 “재산세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제6조제2호 중 “경우 산정 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0년간” 을 “경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을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

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기한까지 면제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p>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  
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 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  
----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 -----  
- 본문 ----- 재산세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 및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의 경우 산정 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5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의 경우 산정 된 세액 및 금액의 전부를 10년간 감면 및 공제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15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 및 공제한다.

2. -----  
- 경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 2019-535호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반영하여 우리 시 규칙을 정비
- 물가상승 대비 보증금액 한도가 낮아 예기치 못한 사고 시 발생하는 재정손실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보험가입액 상향 조정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안 제163조)
  - 보증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
- 2019년 1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수정

- 징수과장 → 시민납세과장

###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1106@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조촌동), 3층 회계과

3) 팩스 : 063-452-8161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회계과(전화 : 063-454-23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군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규칙 제 호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을 “통합지출관, 시민납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징수과장”을 각각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수과장”을 각각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통합지출관, 징수과장”을 “통합지출관,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징수과장이”를 “시민납세과장이”로 한다.

제32조 중 “징수과장에게”를 “시민납세과장에게”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징수과장”을 각각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3항 중 “징수과장”을 각각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96조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수과장”을 각각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보증을 설정”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내용의 본청 관직명 중 “징수과장”을 “시민납세과장”으로 한다.

### 부 칙 (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관·과·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과 세무과장, 징수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 징수과장,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생략)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관·과·소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징수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  
 -----  
 -----  
 ----- 시민납세과장 -----  
 -----.

② -----  
 -----  
 ----- 시민납세과장 -----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통합지출관, 시민납세과장 -----  
 -----  
 -----.

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② ~ ⑤ (생략)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관·과·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징수과장은 각 관·과·소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각 관·과·소,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  
----- 시민납세과장이-----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  
-----  
-----  
-----  
-- 시민납세과장에게-----  
-----  
-----.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시민납세과장-----  
-----  
-----  
-----  
-----  
-----.

② 시민납세과장-----  
-----  
-----  
-----  
-----

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각 관·과·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징수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생략)

② 관·과·소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과장의 협의를 거쳐 자치행정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략)

② 자치행정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129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에 승

-----  
 -----  
 -----  
 -----  
 -----  
 -----  
 -----  
 -----  
 -----  
 -----

③ 시민납세과장-----  
 -----  
 -----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시민납세과장-----  
 -----  
 -----  
 -----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인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  
지출관 및 징수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징수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  
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생략)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별지 제130호서식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징수  
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  
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  
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징수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  
계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한다.

----- 시민납  
세과장-----  
-----.

③ 시민납세과장-----  
-----  
-----  
-----.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시민납세과장-----  
-----.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  
-----  
-----  
-----  
----- 시민납세과장---  
-----  
-----  
-----.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 시  
민납세과장-----.

②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  
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징수과  
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  
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  
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  
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  
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  
무원을 피보증인으로하고 보험  
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  
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  
로서 이루어진다.

④ (생략)

제163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61  
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  
정보증 한도액은 5,000만원으  
로 한다.

② -----  
----- 시민납세과장  
-----  
-----  
--.

제162조(재정보증) ① -----  
-----  
-----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

<삭 제>

② 제1항-----  
-----  
-----  
-----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3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  
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9-543호

군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지원액(안 제4조)

- 쌍생아 지원금 및 타법지원금 조항 기재 순서 조정(안 제4조 제1항, 안 제4조 제2항)
- 지원액 선정기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 및 부모에 따른 차등 지급을 동일액으로 변경(안 제4조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4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arae1920@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3층 복지지원과

3) 팩스 : 063-454-3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복지지원과(전화 : 063-454-31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

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
- 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이내

제4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를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액) ①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u>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u></p> <p>1. <u>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u></p> <p>    가. <u>장애등급 1급내지 2급 : 150만원 이내</u></p> <p>    나. <u>장애등급 3급내지 4급 : 100만원 이내</u></p> <p>    다. <u>장애등급 5급내지 6급 : 70만원 이내</u></p> <p>2. <u>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u></p> <p>    가. <u>장애등급 1급내지 2급 : 100만원 이내</u></p> <p>    나. <u>장애등급 3급내지 4급 : 70만원 이내</u></p> <p>    ②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p>	<p>제4조(지원액) ①----- ----- ----- ----- <u>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 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u></p> <p>1. <u>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u></p> <p>    가. <u>삭제</u></p> <p>    나. <u>삭제</u></p> <p>    다. <u>삭제</u></p> <p>2. <u>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 이내</u></p> <p>    가. <u>삭제</u></p> <p>    나. <u>삭제</u></p> <p>    ②----- -----</p>

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한다.

-----  
 ----- .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군산시 공고 제2019-544호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군산시장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별지 제6호 서식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4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arae1920@korea.kr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3층 복지지원과

3) 팩스 : 063-454-3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복지지원과(전화 : 063-454-31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별지 제6호 서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내용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b>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b>			
수리 업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리기사 성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 월일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주소		장애명 / <b>등급</b>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b>군산시장 귀하</b>			
※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개 정 안			
확인자 : 00읍·면·동주민(행정복지)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b>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b>			
수리 업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리기사 성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 월일	수급유형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일반
	주소		장애명 / <b>장애정도</b>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전동스쿠터	청구금액 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b>군산시장 귀하</b>			
※ 구비서류 :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군산시 고시 제2019 - 26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65호선)사업
  - 나. 명 칭 : 양촌1길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폭 : 17 ~ 20m, 길이 580m, 면적 : 당초 9,663m<sup>2</sup> ⇒ 변경 9,658 m<sup>2</sup>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외항로 1245, 군산시 구암로 50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쓰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0. 04.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및 지장물조서(추가) : 붙임참고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구분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기정	1	구암동	274-13	장	560	56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2	구암동	276-24	대	6	6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3	조촌동	2-26	장	26,551	1,047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4	조촌동	55-1	구	40	40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	-	-	-
기정	5	조촌동	50-1	구	137	136	군산시	-	-	-	-	-
기정	6	조촌동	61	구	284	270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61	구	284	262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기정	7	조촌동	61-2	구	76	7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61-2	구	76	3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기정	8	조촌동	57	구	244	203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57	구	244	208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기정	9	조촌동	704-3	도	716	31	국(국토교통부)	-	-	-	-	-
기정	10	조촌동	36-3	구	1,155	1,155	군산시	-	-	-	-	-
기정	11	조촌동	704	도	584	49	국(국토교통부)	-	-	-	-	-
기정	12	조촌동	7-5	구	1,726	1,726	군산시	-	-	-	-	-
기정	13	조촌동	25-2	구	93	93	군산시	-	-	-	-	-
기정	14	조촌동	8-2	구	1,627	154	농어촌공사	-	-	-	-	-
기정	15	조촌동	9-1	답	119	119	군산시	-	-	-	-	-
기정	16	조촌동	10-5	구	635	635	군산시	-	-	-	-	-
기정	17	구암동	602-2	도	29	25	국(국토교통부)	-	-	-	-	-
기정	18	구암동	272-12	구	2,728	1,530	군산시	-	-	-	-	-
기정	19	구암동	276-7	장	694	18	박종인	군산시 구암로 78	(주)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
기정	20	구암동	275-7	도	691	426	군산시	-	-	-	-	-
기정	21	구암동	278-6	도	73	51	군산시	-	-	-	-	-
기정	22	조촌동	10-6	도	321	234	군산시	-	-	-	-	-
기정	23	조촌동	8-10	도	40	40	채규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83	-	-	-	-
기정	24	조촌동	8-11	도	53	53	채규상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83	-	-	-	-
기정	25	조촌동	7-6	도	102	102	유신복	군산시 조촌동 66	-	-	-	-
기정	26	조촌동	25-3	도	53	53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
기정	27	조촌동	37-4	도	53	49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구적 오차 정정
변경		조촌동	37-4	도	53	51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기정	28	조촌동	37-5	도	7	1	고덕영	군산시 조촌동 32	-	-	-	-
기정	29	조촌동	36-6	도	225	225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	-	-	-
기정	30	조촌동	58	전	334	43	문부철	군산시 신영동 65	-	-	-	-
기정	31	조촌동	36-8	도	463	247	군산시	-	-	-	-	-
기정	32	조촌동	7-7	도	1,031	307	군산시	-	-	-	-	-
기정	33	조촌동	37-1	답	60	28	군산시	-	-	-	-	-
기정	합 계				41,510	9,663						
변경					41,510	9,658						

## ○ 지장물조서(추가)

일련 번호	지장물의 표시						소유자		관리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조촌동	61	담장	부록담장 1.5m x 10(L)m	1		문부철	군산시 신영동 65				
				옹벽기초 1m x 10(L)m	1							
			담장	철조망 1m x 8.5m	1							
			감나무	1.5m(H)	1							

군산시 고시 제 2019 - 2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4

##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디오션시티 A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국제자산신탁(주)
  - 나. 대 표 자 : 이창하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우레성대로 22길 32  
(오금동 23-1, 3F~5F)
-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포스코건설
  - 나. 대 표 자 : 이명훈
  - 다.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2-31번지의외 2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다. 대지면적 : 43,781m<sup>2</sup>

라. 건축면적 : 7,115.8381m<sup>2</sup>(건폐율 : 16.25%)

마. 연 면 적 : 146,798.4157m<sup>2</sup> (용적율 : 248.01%)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외 977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sup>2</sup> )	공용면적(m <sup>2</sup> )	공급면적(m <sup>2</sup> )	비고
계		977				
59A	민영주택	172	59.9973	19.6827	79.6800	
59B	민영주택	58	59.9994	20.0511	80.0505	
84A	민영주택	495	84.9932	25.4429	110.4361	
84B	민영주택	81	84.9911	26.5339	111.5250	
103	민영주택	112	103.9945	30.4188	134.4133	
118	민영주택	56	118.9992	34.1701	153.1693	
145	민영주택	3	145.9995	44.1375	190.1370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71,789,345천원

차. 사업기간 : 2019년 5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 5. 주요변경사항

가. 사업주체 등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주체 변경	(주)디오션시티 쓰리	국제자산신탁(주)	
시공사 지정	-	(주)포스코건설	
사업기간 변경	2019. 4. 1.~ 2022. 9.30	2019. 5. 1.~ 2021.10.31	

6. 설계도서 : 변경사항 없음

7. 사업계획변경승인 : 2019. 3.14.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9-458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5.

##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9. 3. 5.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9. 3. 5.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6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옥서면장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자동인증기 신규 설치	옥서면
	군산시옥서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소룡동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NBR	통합발급기 신규 설치	소룡동
	군산시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NBR		
	군산시장의인 조촌동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통합발급기 신규 설치	조촌동
	군산시조촌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폐기	군산시옥서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인증기 신규설치에 따른 기존 공인 폐기	옥서면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폐기	군산시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황동	통합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기존 공인 폐기	소룡동

군산시 공고 2019 - 497호

## 보상계획(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13.

군 산 시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 나. 위 치 :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4-3 ~ 옥산면 당북리 28-46 일원
-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적 : 211,521m<sup>2</sup>
  - 규모 : 토지 158필지, 물건 14건
- 라. 사업기간 : 2016. 8. 1. ~ 2023. 12. 31.
- 마.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성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 가. 토지 및 물건 등 :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옥산면 당북리 일원 등

###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9. 3. 13. ~ 2019. 3. 27 (15일간)
- 나. 열람장소 : 군산시 안전총괄과 하천계(☎063-454-3853)
-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4.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19. 4월 이후부터 보상협의 예정
-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보상액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1)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 5. 기타사항

-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별첨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각 1부. 끝.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	군산	옥구	이곡	4-3	답	3,937	1,022	나운동835주공3아파트111동208호	정난숙
2	군산	옥구	이곡	4-2	답	3,957	3,957	삼학동 787-4	함명자
3	군산	옥구	이곡	4-39	구	66	11	옥구읍 이곡리 291	김이수
4	군산	옥구	이곡	4-38	구	66	66	군산시 오룡동 850	고원덕
5	군산	옥구	이곡	4-1	답	3,402	3,402	옥구읍 이곡리 260	정영자
6	군산	옥구	이곡	3-38	구	66	16	회현면 대정리 611	최순례
7	군산	옥구	이곡	3-37	구	66	66	옥산면 금성리 65	강정선
8	군산	옥구	이곡	3-36	구	20	20	회현면 대정리611	최순례
9	군산	옥구	이곡	3-3	답	3,901	1,046	군산시 중동 365	이정원
10	군산	옥구	이곡	3-2	답	3,901	3,901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10, 2동 1402호 (수송동,동신아파트)	두순례 외 3인
11	군산	옥구	이곡	3-1	답	3,198	3,19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429-2	김용연 외1인
12	군산	옥구	이곡	2-3	답	3,911	1,244	서흥남동812-14고려아파트3동303호	이덕호
13	군산	옥구	이곡	2-2	답	3,914	3,914	군산시 소룡길 86-5,나동204호(산북동,금강맨션아파트)	김곤
14	군산	옥구	이곡	2-1	답	2,776	2,776	군산시 수송동 64-14	조남승
15	군산	옥구	이곡	2-39	구	66	16	회현면 대정리 328	강응례
16	군산	옥구	이곡	2-38	구	66	66	군산시 소룡길 86-5,나동204호(산북동,금강맨션아파트)	김곤
17	군산	옥구	이곡	2-37	구	347	347	군산시 소룡길 86-5,나동204호(산북동,금강맨션아파트)	김곤
18	군산	옥구	이곡	2-65	구	10	3	군산시 소룡길 86-5,나동204호(산북동,금강맨션아파트)	김곤
19	군산	옥구	이곡	1-39	구	66	17	옥구읍 이곡리 264	백낙중
20	군산	옥구	이곡	1-38	구	66	66	서울 강남구 역삼동835-1럭키빌라106호	강영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21	군산	옥구	이곡	1-37	구	50	50	옥구읍 이곡리 264	백낙중
22	군산	옥구	이곡	1-65	구	13	3	옥구읍 이곡리 264	백낙중
23	군산	옥구	이곡	1-4	답	3,964	1,362	옥구읍 이곡리 250-1	김현철
24	군산	옥구	이곡	1-3	답	3,957	3,95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5 우성아파트102동505호	정흥열
25	군산	옥구	이곡	1-2	답	2,833	2,833	옥구읍 이곡리 250-1	김현철
26	군산	옥구	이곡	1-1	대	226	226	군산시 옥구읍 하포로 468	백춘자
27	군산	옥구	이곡	246-13	대	16	16	국	기획재 정부
28	군산	옥구	이곡	247-14	대	43	43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44-52	이석태
29	군산	옥구	이곡	246-26	대	30	9	국	기획재 정부
30	군산	옥구	이곡	243	대	109	109	옥구읍 이곡리 260	한병섭
31	군산	옥구	이곡	243-1	대	179	179	옥구읍 이곡리 274	한병수
32	군산	옥구	이곡	247-13	전	56	5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원관원길 44-52	이석태
33	군산	옥구	이곡	246-12	대	55	55	국	기획재 정부
34	군산	옥구	이곡	246-25	대	81	29	국	기획재 정부
35	군산	옥구	이곡	247-12	전	344	344	국	재정경 제원
36	군산	옥구	이곡	247-11	전	43	43	국	재정경 제원
37	군산	옥구	이곡	246-11	대	43	43	회현면 대정리611-74	이영자
38	군산	옥구	이곡	246-10	대	86	86	국	국(국 세청)
39	군산	옥구	이곡	246-24	대	36	36	국	국(국 세청)
40	군산	옥구	이곡	293-25	답	3,203	3,203	옥구읍 이곡리 274	한병수
41	군산	옥구	이곡	293-16	답	3,286	1,013	옥구읍 이곡리 260	한병섭
42	군산	옥구	이곡	293-2	대	648	648	옥구읍 이곡리 274	한병수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43	군산	옥구	이곡	293-3	대	721	143	옥구읍 이곡리 260	한병섭
44	군산	옥구	이곡	247-10	전	132	132	군산시 하나운로28,205동511호(나운 동,나운세경아파트)	임종희
45	군산	옥구	이곡	247-9	전	83	8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511호	임종희
46	군산	옥구	이곡	246-8	대	139	139	국	기획재 정부
47	군산	옥구	이곡	246-7	대	14	14	국	기획재 정부
48	군산	옥구	이곡	293-24	도	50	50	옥구읍 이곡리 274	한병수
49	군산	옥구	이곡	293-1	답	2,296	2,296	옥구읍 이곡리 875	한양금
50	군산	옥구	이곡	247-8	대	23	23	서수면 원관원길 44-52	이석태
51	군산	옥구	이곡	246-6	대	13	13	국	기획재 정부
52	군산	옥구	이곡	292-21	답	69	69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53	군산	옥구	이곡	247-7	대	159	159	옥구읍 이곡리 875	한양금
54	군산	옥구	이곡	246-5	대	215	203	국	기획재 정부
55	군산	옥구	이곡	292-20	답	66	66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56	군산	옥구	이곡	246-2	대	350	350	서수면 원관원길 44-52	이석태
57	군산	옥구	이곡	247-15	대	13	13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58	군산	옥구	이곡	247-1	대	85	85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59	군산	옥구	이곡	292-25	답	1,615	1,615	옥구읍 이곡리 268	한병선
60	군산	옥구	이곡	246-1	전	159	159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외1인
61	군산	옥구	이곡	292-19	답	76	76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62	군산	옥구	이곡	248	대	175	175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63	군산	옥구	이곡	249-2	도	23	23	옥구읍 이곡리 249	강순선
64	군산	옥구	이곡	292-18	전	281	28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65	군산	옥구	이곡	249	대	443	443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66	군산	옥구	이곡	292-1	대	99	99	옥구읍 이곡리 61	김현철
67	군산	옥구	이곡	292-3	답	4,007	2,467	서당길 11, 109동 1103호	김기자
68	군산	옥구	이곡	292-2	창	2,431	2,431	옥구읍 이곡리 268	한병선
69	군산	옥구	이곡	292-22	답	1,071	1,07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70	군산	옥구	이곡	250-1	대	460	460	옥구읍 이곡리 250-1	김현철
71	군산	옥구	이곡	250-2	도	36	36	옥구읍 이곡리 61	김현철
72	군산	옥구	이곡	295-1	대	307	307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아파트 330동 103호	김용석
73	군산	옥구	이곡	291-3	답	3,947	151	군산시 평화길 139(장미동)	황병찬
74	군산	옥구	이곡	291-32	도	99	99	군산시 오룡동 84-4	차대자
75	군산	옥구	이곡	291-2	답	3,987	3,987	군산시 용둔길12, 101동1705호(미룡동,금광베네 스타)	윤희숙
76	군산	옥구	이곡	291-1	답	3,517	3,517	경남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 310-3	김용두 외3인
77	군산	옥구	이곡	291-17	구	66	66	옥구읍 이곡리 291	김균수
78	군산	옥구	이곡	290-18	구	66	45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79	군산	옥구	이곡	290-17	구	66	66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61	김대식
80	군산	옥구	이곡	290-2	답	4,026	3,115	옥구읍 이곡리 61	이순복
81	군산	옥구	이곡	290-1	답	3,977	3,977	옥구읍 이곡리 61	이순복
82	군산	옥구	상평	1-18	답	4,099	2,459	나운동 489 금호타운아파트 103동 203호	백낙선
83	군산	옥구	상평	1-17	답	4,060	2,335	옥구읍 이곡리 268	한병선
84	군산	옥구	상평	1-16	답	4,040	2,329	군산시 백토로93, 7동601호(문화동,삼성아파트)	문복희
85	군산	옥구	상평	1-15	답	4,040	2,309	옥구읍 어은리 260	이복순 외1인
86	군산	옥구	상평	1-14	답	4,043	2,306	군산시경암동 552-10	이월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87	군산	옥구	상평	1-13	답	4,043	2,312	옥산면 금성리 253	김원하
88	군산	옥구	상평	1-12	답	4,050	2,300	옥산면 금성리 253	김원하
89	군산	옥구	상평	1-11	답	4,050	2,305	옥산면 금성리 253	김원하
90	군산	옥구	상평	1-10	답	4,026	2,291	옥산면 금성리 253	김원하
91	군산	옥구	상평	1-9	답	4,026	2,299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9-2 수송아이파크 108동 1102호	이양수
92	군산	옥구	상평	1-8	답	4,060	2,315	옥구읍 이곡리 339	박청자
93	군산	옥구	상평	1-7	답	4,854	2,735	군산시 수송동 742	채규인
94	군산	옥구	상평	1-6	답	4,066	2,423	옥산면 당북리 136-1	이용구
95	군산	옥구	상평	1-5	답	3,967	2,279	군산시 선양동 216	김경자
96	군산	옥구	상평	1-19	답	1,993	1,13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48-4	유경례
97	군산	옥구	상평	1-4	답	1,993	1,141	군산시 상신3길 20-3(나운동)	유경례
98	군산	옥구	상평	1-3	답	3,987	2,308	군산시 백토로20(문화동)	문순복
99	군산	옥구	상평	1-2	답	4,007	2,314	옥산면 옥산리 643	최주철
100	군산	옥구	상평	1-1	답	3,675	2,139	김제시 신평동 452 새한아파트 308호	박탁
101	군산	옥산	당북	112-1 1	답	1,398	1,318	옥산면 금성리 292-8	이점룡
102	군산	옥산	당북	112-4	답	3,947	2,390	군산시 삼학3길 37-1(삼학동)	이승구 외1인
103	군산	옥산	당북	112-3	답	3,947	2,405	군산시 경암동 660-5	이문형
104	군산	옥산	당북	112-2	답	3,921	2,408	군산시 하나운로 45, 107동 1203호	주수용 외1인
105	군산	옥산	당북	112-1	답	2,417	2,094	군산시 하나운로 45, 107동 1203호	주수용 외1인
106	군산	옥산	당북	135-8	대	27	27	옥산면 당북리 135	이종옥
107	군산	옥산	당북	137-1	대	268	268	옥산면 당북리 137-1	최일영 외2인
108	군산	옥산	당북	136-1	대	476	476	옥산면 당북리 136-1	이용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09	군산	옥산	당북	135-1	대	360	360	군산시 옥산면 백석로 249	김명경
110	군산	옥산	당북	139-1	전	66	66	옥산면 당북리 165-6	최희승 외1인
111	군산	옥산	당북	138-2	대	162	162	군산시 옥산면 하포로 330	김성길
112	군산	옥산	당북	140-1	전	30	30	옥산면 당북리 165-6	최희승 외1인
113	군산	옥산	당북	165-6	대	506	506	옥산면 당북리 165-6	최희승
114	군산	옥산	당북	139-2	답	4,436	4,436	군산시 대명동 384-7	유희자
115	군산	옥산	당북	164-1	답	3,093	3,093	대전 서구 정림동640우성아파트118동10 06호	유영란
116	군산	옥산	당북	165-5	구	73	73	대전 서구 정림동640우성아파트118동10 06호	유영란
117	군산	옥산	당북	161-12	답	3,977	3,977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89-11	전용석
118	군산	옥산	당북	166-4	답	2,489	2,48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5 미장코아루아파트 104동 1501호	윤경신
119	군산	옥산	당북	167-4	답	40	40	익산시 배산로34-1, 103동1503호(송학동,송학현대 아파트)	김일중 외2인
120	군산	옥산	당북	168-8	답	11	11	국	기획재 정부
121	군산	옥산	당북	166-1	답	116	116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497-5	최한별
122	군산	옥산	당북	161-1	답	102	102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1,1819동1302호(상동, 반달마을)	조미애
123	군산	옥산	당북	166-2	답	136	136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1,1819동1302호(상동, 반달마을)	조미애
124	군산	옥산	당북	168-13	답	65	65	국	기획재 정부
125	군산	옥산	당북	168-9	답	116	116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1,1819동1302호(상동, 반달마을)	조미애
126	군산	옥산	당북	168-2	답	1,623	1,623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라미라다시 로즈크랜스 애비뉴 18번가 16124	양기정
127	군산	옥산	당북	168-3	답	3,676	3,60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1,1819동1302호(상동, 반달마을)	조미애
128	군산	옥산	당북	171-2	답	1,441	1,441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497-5	최한별
129	군산	옥산	당북	172-1	답	615	615	군산시 슬꼬지3길 10	문영태 외4인
130	군산	옥산	당북	171-1	답	3,425	3,425	군산시 슬꼬지3길 10	문영태 외4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31	군산	옥산	당북	171-3	답	3,841	3,841	군산시 동흥남동 139	박종렬
132	군산	옥산	당북	204-2	답	1,822	1,822	전라북도 군산시 흥남2길 34 (동흥남동)	한병두
133	군산	옥산	당북	199-1	답	4,043	4,043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799-39	이성태
134	군산	옥산	당북	204-1	답	1,802	1,802	옥산면 당북리 585-5	강광환
135	군산	옥산	당북	206-3	답	4,017	4,017	옥산면 당북리 587-14	조연녀
136	군산	옥산	당북	205-1	답	380	380	옥산면 당북리 585-5	강광환
137	군산	옥산	당북	206-1	답	3,934	3,934	옥산면 당북리 585-5	강광환
138	군산	옥산	당북	209-4	답	3,931	3,93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내류길 30	최무웅 외1인
139	군산	옥산	당북	210-3	답	4,367	4,367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14-3	황옥기
140	군산	옥산	당북	209-1	답	3,579	3,573	지곡동259동신아파트101동13 02호	정광선
141	군산	옥산	당북	210-1	답	3,979	3,979	군산시 문화동 2-35	문상철
142	군산	옥산	당북	248-13	답	53	53	군산시 장재동 145	강성학
143	군산	옥산	당북	248-12	답	60	60	군산시 장재동 145	강성학
144	군산	옥산	당북	248-8	답	3,838	3,838	옥산면 당북리 46-4	문세훈
145	군산	옥산	당북	248-7	답	4,337	4,33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 31동504호(이촌동,현대아파트 )	오은숙
146	군산	옥산	당북	248-11	답	1,993	1,99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566-3	이원근
147	군산	옥산	당북	248-5	답	1,993	1,993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186	노윤태 외1인
148	군산	옥산	당북	248-4	답	4,314	4,3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3길 6(효자동3가)	유대현
149	군산	옥산	당북	247-12	답	565	565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66, 11동 906호	신순용
150	군산	옥산	당북	247-9	답	1,568	1,568	군산시 조촌동 781-1	박정희
151	군산	옥산	당북	248-1	답	3,881	3,881	군산시 수송동 64-41	송진석
152	군산	옥산	당북	29-14	도	119	119	옥산면 금성리 100	고주봉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53	군산	옥산	당북	29-23	도	149	130	옥산면 당북리 563	이종구
154	군산	옥산	당북	29-24	답	1,068	1,068	서울 송파구 석촌동 268-8. 101호	강금례
155	군산	옥산	당북	29-25	답	117	117	서울 송파구 석촌동 268-8. 101호	강금례
156	군산	옥산	당북	252-7	답	55	55	옥산면 당북리 770	두영복
157	군산	옥산	당북	251-1	답	2,297	2,297	옥산면 당북리 23-7	김순자
158	군산	옥산	당북	28-46	답	1,537	1,537	군산시 삼학동 813-16	여창화
합 계						268,142	211,521		

# 물 건 조 서

연 번	물건소재지	번지	물건명	용도	규격	단위	수령	수량	소유권자	비 고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1-1	건물	주거(1층)	적벽돌 슬라브	동		1	군산시옥구읍 이곡리1-1	
			건물	주거(2층)	적벽돌 싱글	동		1		
			건물	건사	조립 합석	동		1		
			건물	보일러실	적벽돌 합석	동		1		
			건물	가추	철제 합석	동		1		
			건물	창고	조립 합석	동		1		
			적벽돌 담		H0.9 x 9.0	m		9		
			웬스		H1.4 x 23.0	m		23		
			수목	단풍나무		주	5	1		
			수목	향나무		주	10	9		
			수목	감나무		주	5	2		
			수목	매실나무		주	10	1		
			수목	무화과나 무		주	10	7		
			수목	남천		주	5	7		
			수목	철쭉		주	5	7		
			수목	회향목		주	7	7		
			수목	진달래		주	5	20		
			수목	개나리		주	10	50		
			수목	복분자		주	2	10		
			수목	동백나무		주	5	1		
2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46-5	건물	주거	brick 합석	동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46-5	
			건물	창고	brick 슬라브	동		1		
			건물	화장실	brick 슬라브	동		1		
			건물	창고	brick 스레트	동		1		
			brick담		H1.5 x 2.5	m		2.5		
			수목	감나무		주	30	6		
			수목	대추나무		주	30	3		

연 번	물건소재지	번지	물건명	용도	규격	단위	수령	수량	소유권자	비 고
			수목	매실나무		주	30	6		
			수목	사철나무		주	30	15		
3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3-2	건물	주거	브릭 합석	동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3-2	
			건물	가추	조립 합석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가추	철제 스레트	동		1		
			비닐하 우스		철제 비닐	동		1		
			건물	견사	철제	동		1		
			건물	창고	철제 스레트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주거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주거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주거	브릭 합석	동		1		
			건물	창고	브릭 합석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관정			공		1		
			브릭담		H1.3 x 35.0	m		35		
			수목	감나무		주	35	1		
			수목	감나무		주	15	10		
			수목	대추나무		주	20	2		
			수목	대추나무		주	10	3		
			수목	뽕나무		주	10	1		
			수목	사과나무		주	10	1		
			수목	두릅		주	10	6		
			수목	장미		주	10	1		
			수목	무궁화		주	7	35		
4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46-2	건물	폐건물	브릭 스레트	동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89	
			건물	가추	브릭 스레트	동		1		



연 번	물건소재지	번지	물건명	용도	규격	단위	수령	수량	소유권자	비 고
			건물	폐건물	브릭 스레트	동		1		
5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49	건물	주택	브릭 기와	동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49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조사 거부	
6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50-1	건물	주거	적벽돌 슬라브	동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50-1	
			건물	창고	적벽돌 슬라브	동		1		
			건물	화장실	브릭 슬라브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가추	브릭 스레트	동		1		
			브릭담		H1.5 x 220.5	m		220.5		
			목제대 문		H2.0 x 3.0	식		1		
			관정			공		1		
			수목	감나무		주	20	3		
			수목	감나무		주	10	1		
			수목	감나무		주	5	1		
			수목	매실나무		주	7	1		
			수목	대추나무		주	15	1		
			수목	대추나무		주	7	5		
			수목	배나무		주	15	1		
7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1-1	수목	매실나무		주	15	11	경남 양산군 장안읍 길천리 310-3	
			수목	감나무		주	20	1		
8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2-2	컨테이 너	사무실	3.0 x 6.0	동		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2-2	
			건물	식당	철제 합석	동		1		
			건물	창고	철제 합석	동		1		
			건물	창고	철제 합석	동		1		
			건물	창고	조립식	동		1		
			건물	창고	철제 합석	동		1		

연번	물건소재지	번지	물건명	용도	규격	단위	수령	수량	소유권자	비고
			건물	창고	조립식	동		1		
			건물	창고	철제합석	동		1		
			건물	창고	조립식	동		1		
			건물	창고	철제합석	동		1		
			건물	창고	철제합석	동		1		
			건물	저온창고	조립식	동		1		
			건물	건사	철제합석	동		1		
			컨테이너	창고	3.0 x 6.0	동		1		
			비닐하우스		철제비닐	동		1		
			비닐하우스		철제스레트보온덮개	동		1		
			비닐하우스		철제비닐	동		1		
			건조기			대		4		
			쌀저장탱크			대		1		
			물탱크		1T	대		2		
			물탱크		3T	대		1		
			기름탱크		3T	대		1		
			크레인			대		1		
9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5-1	건물	주거	조립식	동		1	전북 군산시 중동 248-4	
			웬스		H1.6 x 460.0	m		460		
			목제대문		H1.6 x 3.5	식		1		
			수목	사철나무		주	10	400		
			수목	벗나무		주	30	2		
			수목	회향목		주	10	5		
10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6-1	건물	주거	2층 적벽돌슬라브	동		1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6-1	
			건물	창고	철제합석	동		1		
			건물	창고	조립식	동		1		
			철대문		H1.8 x 1.2/3.0	식		2		
			브럭담		H1.2 x 32.0	m		32		

연 번	물건소재지	번지	물건명	용도	규격	단위	수령	수량	소유권자	비 고
			수목	호두나무		주	20	1		
			수목	호두나무		주	5	5		
			수목	매실나무		주	10	2		
			수목	대추나무		주	10	18		
			수목	앵두나무		주	10	2		
			수목	밤나무		주	15	6		
			수목	살구나무		주	15	5		
			수목	감나무		주	15	5		
			수목	두릅		주	5	20		
			수목	단풍나무		주	10	5		
			수목	소나무		주	20	1		
			수목	소나무		주	5	4		
			수목	복숭아나 무		주	10	3		
			수목	보리밥나 무		주	10	1		
			수목	사철나무		주	10	700		
			수목	라일락		주	10	3		
			수목	수국		주	10	3		
			수목	진달래		주	10	1		
			수목	취자나무		주	5	1		
			수목	도라지		주	5	2		
			수목	더덕		주	5	1		
			수목	장미		주	5	10		
			수목	석류		주	5	1		
			수목	백합		주	5	20		
			수목	국화		주	5	20		
			수목	머루나무		주	5	1		
			수목	벗나무		주	5	4		
			수목	백일홍		주	5	3		

연 번	물건소재지	번지	물건명	용도	규격	단위	수령	수량	소유권자	비 고
			수목	자귀나무		주	8	1		
			수목	은행나무		주	20	2		
			수목	은행나무		주	5	2		
			수목	느릅나무		주	20	4		
			수목	박태기나 무		주	10	30		
11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7-1	건물	창고	조립식	동		1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7-1	
									새입자	
12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7-1	건물	주거	브릭 스레트	동		1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7-1	
			건물	슈퍼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가추	철제 스레트	동		1		
			건물	화장실	브릭 슬라브	동		1		
			목제대 문		H1.5 x 2.0	식		1		
			브릭담		H1.5 x 4.1	m		4.1		
			수목	감나무		주	15	4		
			수목	모과나무		주	15	2		
			수목	대추나무		주	15	2		
			수목	대추나무		주	10	2		
			수목	석류		주	15	1		
			수목	매실나무		주	10	1		
			수목	무궁화		주	10	30		
			수목	벗나무		주	15	1		
			수목	버드나무		주	40	1		
13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8-2	건물	주거	황토 스레트	동		1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138-2	
			건물	가추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주거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욕실	브릭 스레트	동		1		
			건물	창고	브릭 스레트	동		1		
			철대문		H2.2 x 2.0	식		1		



군산시 공고 제2019-500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1.

##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9. 3. 11.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9. 3. 11.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홍남동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자동인증기 신규 설치	홍남동
	군산시홍남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우레탄		

군산시 공고 제2019-503호

##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 군 산 시 장

1. 모집인원 : ○ 명

2. 모집분야 및 임기

○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 임 기 : 2019. 5. 22 ~ 2021. 5. 21 (2년)

3.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그 밖에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위의 사항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해당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우선

○ 본 위원회 장기연임 및 각종 위원회에 다수 위촉자 제한될 수 있음

- 건축사, 기술사 등의 경우 관내 현업종사자 우선적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5.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지원서 1부
- 나. 이력서 1부
-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 양식 : 붙임

##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19. 3. 15. ~ 4. 12.
- 나. 접 수 처 :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 (☎063-454-3502)  
\* 주 소 - (우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 8. 기타 참고사항

- 가. 접수는 2019. 4. 12(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우편, 방문 동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분야별 적정의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합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모집분야		사진 소명함판 (3cmX4cm)
성 명	(한글)		성 별	남	생년월일		
	(한자)			여			
현주소			전화 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현근무지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ul>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지원자 성명 (인/서명)							
군 산 시 장 귀하							

모집분야 :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제출일	출판사· 관련학회	논 문 명	주 요 내 용	참여자수
10.저서 및 논문					

군산시 공고 제2019 - 504호

2018년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결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도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고**

(단위: 원)

수입			지출						
내용		금액(원)	내용		금액(원)				
전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16,167,490	사업비	사례관리	꿈디자인사업비	13,760,000			
	비지정후원금	1,209,292		가족기능강화사업	드림스쿨플러스사업비	3,640,690			
2018년	지정후원금	184,520,680			드림스쿨사업비	11,109,100			
	비지정후원금	9,596,330			가족자원봉사단사업비	12,124,190			
지정 후원금					지역사회보호사업	가계금융역량강화사업비	15,000,000		
						특화사업	꿈날개클럽주니어사업비	5,250,000	
							경제적지원서비스사업비	25,050,310	
				주민조직화	겨울나기지원서비스사업비	4,000,000			
					사회적응향상프로그램사업비	17,916,400			
					희망찾기프로그램사업비	14,564,700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사업비	300,000		
						주민복지증진사업비	8,247,400		
						지역연계사업비	5,112,180		
				마을만들기사업비		7,196,980			
				주민조직화사업비	169,960				
				아동관리사업비	30,000,000				
				계			계		173,441,910
				운영비			인건비	퇴직적립금	8,862,632
			명절지원금					450,000	
			운영비				회의비	90,100	
							여비	340,200	
							협회가입회비	780,000	
기타운영비	228,680								
계			계				10,751,612		
시설비			시설비		2,151,000				
계			계		186,344,522				
비지정 후원금			사례관리	사례관리사업비	25,000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사업비	1,991,175			
			주민복지증진사업비		98,490				
			지역연계사업비		118,130				
			계			계		2,232,795	
			운영비	공공요금	989,240				
				여비	370,600				
				수용비 및 수수료	780,320				
				제세공과금	2,407,500				
				차량비	413,000				
				연료비	68,200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1,561,740				
계			계		6,590,600				
간접비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254,060						
		직원교육훈련비	70,000						
계			계		324,060				
계			계		9,147,455				

		차년도이월금	이월사업비	12,547,860
			비지정후원금	1,658,167
			지정후원금	1,795,788
			계	16,001,815
계	211,493,792	계		211,493,792

2. 법인전입금(후원금) 수입·사용 내역

(단위:원)

수 입		사 용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계	8,200,000	법인전입금	기부식품제공사업	513,720
전년도이월금(법인전입금)	3,400,000		퇴직적립금	986,280
2018년 법인전입금	4,800,000		기타 후생금	450,000
			시설장비유지비	3,000,000
			기타 운영비	550,000
			제세공과금	371,000
			시설비	2,329,000
총 계	8,200,000	총 계	8,200,000	

2019. 3.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9-509호

##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12.

군 산 시 장

1. 목 적 :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 신청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 3. 26(화) 14:00~15:30

나. 장소 : 군산 선유도 초·중학교 강당

※ 진행 : 용역추진 경과보고, 전문가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

3.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선유도, 말도 등 고군산군도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2017 ~ 2021년(5년)

다. 주요내용

1)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운영을 위한 지질·비지질자원 발굴 및 가치 조사

2) 운영·관리 계획 수립,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

4. 기타사항

가. 이번 공청회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 3. 21(목) 18:00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군산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제출 및 FAX(063-452-8165)로 전송

· E-mail : wjsdid11@korea.kr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환경정책과(063-454-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 2019-540호

##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 3. 15.

군 산 시 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호우로 인한 재난이 3회 발생하여 공공시설 피해는 1건, 사유 시설 피해가 1,496건이 집계되었고, 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791건 1,10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는 호우 재난이 3회 발생하여 주택침수 19동, 농업 피해 771건, 산림 피해 1건으로 총 791건 1,102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대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 우리 시의 2018년 재난발생현황은 호우 재난이 3회 발생하였고, 과년도 재난 피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2017년도 재난 1회(호우) 발생, 피해 15건, 복구 4건(3백만원 소요)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2018.10월 조직개편 시행으로 조직 및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1개과 29명으로 5년 평균보다 9명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명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국의 선임과로 조정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7종으로 131개소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37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2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은 1,561백만원으로 1,795백만원(115%) 확보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평균 1,721백만원보다 73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3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4년 평균 546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사용액은 전년도 사용액 753백만원보다 309백만원 감소한 444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3등급으로,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안전도 등급이 증가하였습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역안전도	0.40 미만	0.40~0.45	0.45~0.50	0.50~0.55	0.55~0.60	0.60~0.65	0.65~0.70	0.70~0.75	0.75~0.80	0.80 이상
그 룹	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 500㎡ 이상에서 200㎡ 이상 강화에 따른 대상 시설물의 증가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301개소 시설 중 95개소 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32%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해복구 분야, 재해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분야, 재난관리기금 적립·사용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안전도분야는 하수관거와 하천,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부분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 때문에 내진보강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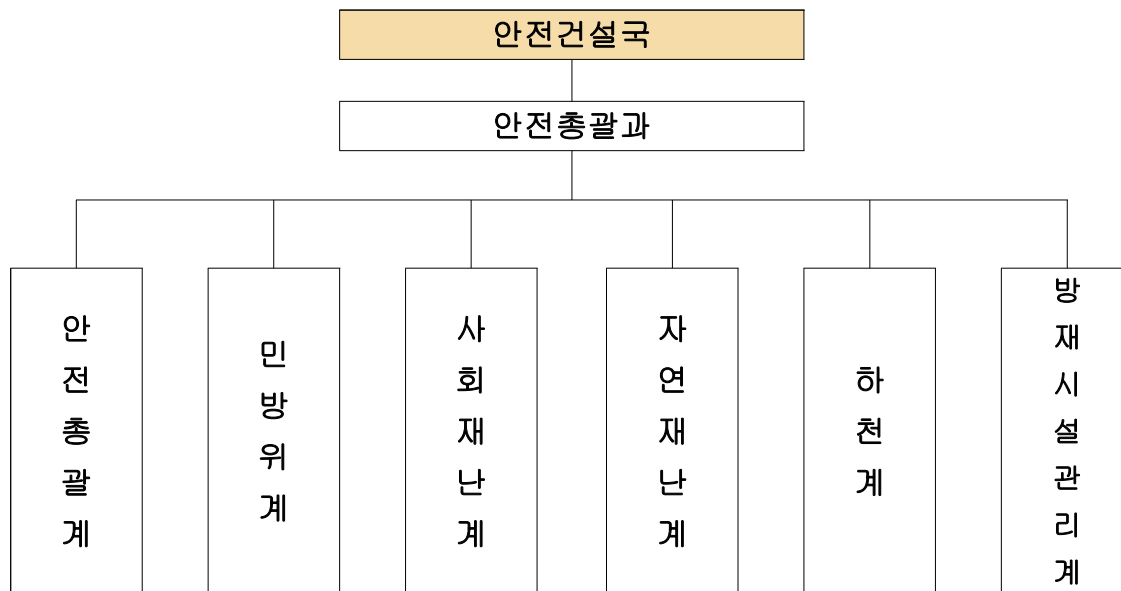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 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6.26~7.4	호우	-사유시설 608건 (주택 침수 9동, 농작물 1,175ha)	-사유시설 608건 (복구비지원 923,300천원)	복구완료
8.26~9.1	호우	-사유시설 88건, 공유시설 1건 (주택 침수 10동, 농업피해 78건, 산림피해 1건)	-사유시설 88건, 공유시설 1건 (복구비지원 92,500천원)	복구완료
제25호 태풍 콩레이	호우	-사유시설 94건 (농업피해 94건)	-사유시설 94건 (복구비지원 87,000천원)	복구완료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가. 기구



※군산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8. 11. 1.)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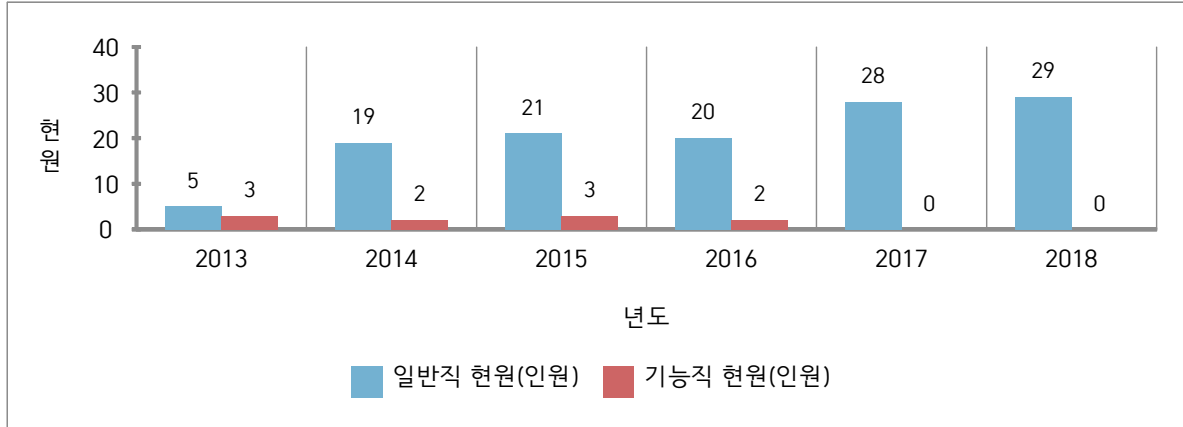
#####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6		1	6	8	4	7		1
	현원	29		1	11	7	3	7		1
안 전 총괄과	정원	26		1	6	8	4	7		1
	현원	29		1	11	7	3	7		1

※ 안전총괄과 외에도 재난상황에 따라 13개분야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하여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탄력적으로 운영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직 현원(인원)	15	19	21	20	28	29
기능직 현원(인원)	3	2	3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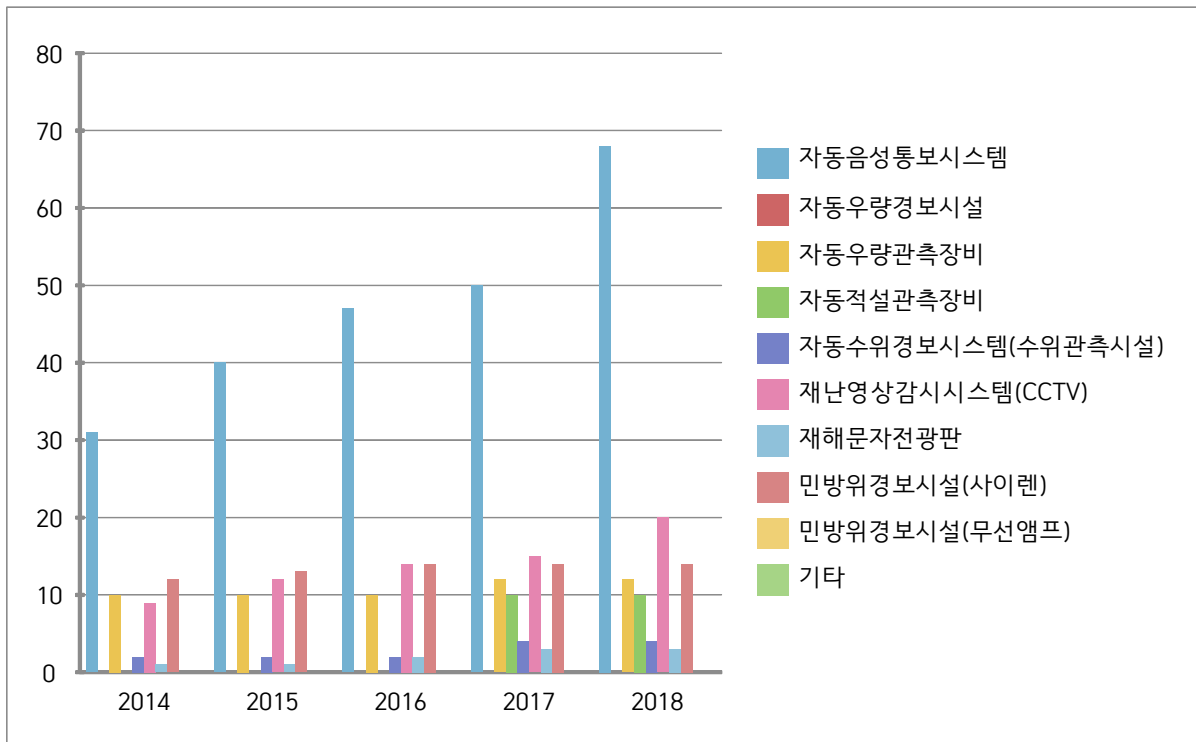
☞ 2017년 대비 정규직 인원 1명 증원

##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8	옥도면 말도리 146 등
자동우량경보시설	0	
자동우량관측장비	12	군산시청 등 읍면동사무소
자동적설관측장비	10	군산시청 등 읍면동사무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4	수송동 7-103 등 2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경포천갑문 등 15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	소룡동 연안여객터미널 등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4	군산시청 읍면동 등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0	
기타	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1	40	47	50	68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10	10	10	12	12
자동적설관측장비				10	10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2	2	2	4	4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9	12	14	15	20
재해문자전광판	1	1	2	3	3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13	14	14	14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기타					



- ☞ 2012년 수해피해이후 지속적인 예·경보 시설물 확충
- ☞ 산단지역 화재, 가스누출 등 사회재난 취약지 예·경보시설 확충
- ☞ 기상관측시설 추가 구축을 통한 정밀관측 실시
- ☞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확충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집합교육 실시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 고
제1기재난관리전문교육(실무자)	3. 22.~3. 23.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1	
재난관리통합과정	4. 4.~4. 6.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1	
재난대비역량지원 기본과정(풍수해)	4. 5.~4. 6.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1	
제1기 재해재난대비과정	4.18.~4.20.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3	
제1기 재난관리전문교육 (부서장)과정	5.11.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4	
제2기 재난안전분야 국정과제 공유과정	5.16.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4	
재난대비 역량지원심화과정	5.31.~6. 1.	국가민방위	2	

(정보통신)		재난교육원		
제3기 재난안전분야 국정과제 공유과정	7.18.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9	
2018.맞춤형 재난관리 전문교육 (제2기 부서장)	9. 6.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2	
2018년 정부합동 가축질병 교육 (재난대비)	9.10.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1	
재난대비심화과정(가축질병)	9.13.~9.14.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1	
재난대비역량지원 심화과정 (식용수)	10. 1.~10. 2.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3	
국민안전문화교육과정	10. 4.~10. 5.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1	
맞춤형 재난관리 전문교육 (2기 실무자)	10.25.~10.26.	전라북도공무 원교육원	8	
재난대비 역량지원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11.22.~11.23.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2	
재난대비심화과정(공동구재난)	12. 3.~12. 4.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1	
2018년 「제4차 산업혁명과 재난 안전 교육환경의 만남」 세미나	12. 19.	국가민방위 재난교육원	3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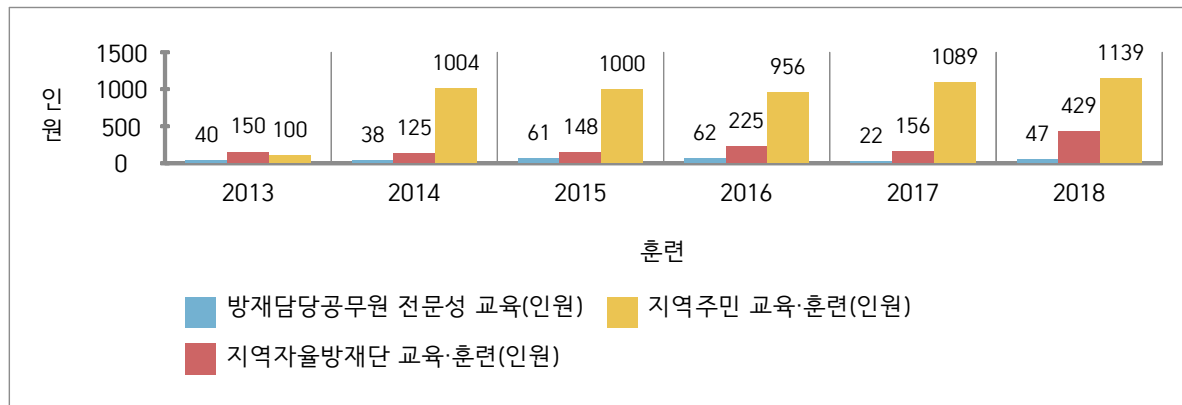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7. 21	군산시청	79	18 전체회의 및 기본소양교육	군산시 자율방재단	
9. 12	시청사, 참사랑요양병원	350	지진대피훈련	군산시	

####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인·관·군 합동훈련	4.19.	외항 제3부두	144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방제 대응훈련	군산시 외 16개 기관단체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 및 화재 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5.9.	군산문화센터 일원	340	지진 발생에 따른 건물 붕괴 및 화재 대비 현장대응훈련	군산시 외 15개 기관단체	
2018 새만금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8.22.	새만금 옥구승수로	70	옥구승수로에 유류유출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현장대응 훈련	군산시 외 8개 기관단체	
2018 해안방제훈련	10.18.	비응도 해안가	90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해안방제 대응훈련	군산시 외 6개 기관단체	
2018 산불진화 합동 훈련	10.19.	상주사 앞	50	산불발생 가상상황 설정에 따른 산불진화 합동훈련	군산시 외 4개 기관단체	
본청 합동 소방훈련	10.30.	청사 광장	400	화재발생 상황에 따른 자위소방대 활동 및 소방서 출동하여 화재 지압	시청직원, 군산소방서 및 민원인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11.15.	성산면 고봉재	45	폭설로 인한 차량통행 등 교통소통 대책 실행 및 긴급제설작업 훈련	군산시 외 2개 기관단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40	38	61	62	22	47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150	125	148	225	156	429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100	1,004	1000	956	1,089	1,139



☞ 지역주민 교육·훈련은 작년 기준 보다 약 5% 증가

- ☞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은 작년대비 54% 증가
-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훈련은 작년대비 64% 증가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3. 7.	도청 재난안전상황실	1	안전신고 추진상황 점검 및 안전신문고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북도	
10.19.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3	'18년 안전신고활성화 방안 토의	행정안전부	
11. 26.	전주시 완산구 홍산4길 14	1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워크숍 개최 관련 협의 등	전라북도	
12. 5. ~ 12. 6.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18	'18년 안전신고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업 활성화 도모	전라북도	
12. 20.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5	1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및 119안전체험관 체험	전라북도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안전모니터(84명)	186	186	-	-	100%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날행사	캠페인 실시	매월4일	관내	매월 60명↑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점검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9	투데이안	
2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점검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9	경인투데이뉴스	
3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점검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9	중부뉴스통신	
4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점검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21	일간대한뉴스	
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2/14	투데이안	
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2/14	전주일보	
7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안전점검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2/14	동양뉴스통신	
8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2/14	경인투데이뉴스	
9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2/15	뉴스메이커	
10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2/18	전주매일신문	
11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14	투데이안	
12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14	전라일보	
13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14	IPN뉴스	
14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14	전주일보	
1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3/14	동양뉴스통신	
1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4/17	중부뉴스통신	
17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4/17	IPN뉴스	
18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4/17	전라일보	
19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4/17	동아뉴스통신	
20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4/17	경인투데이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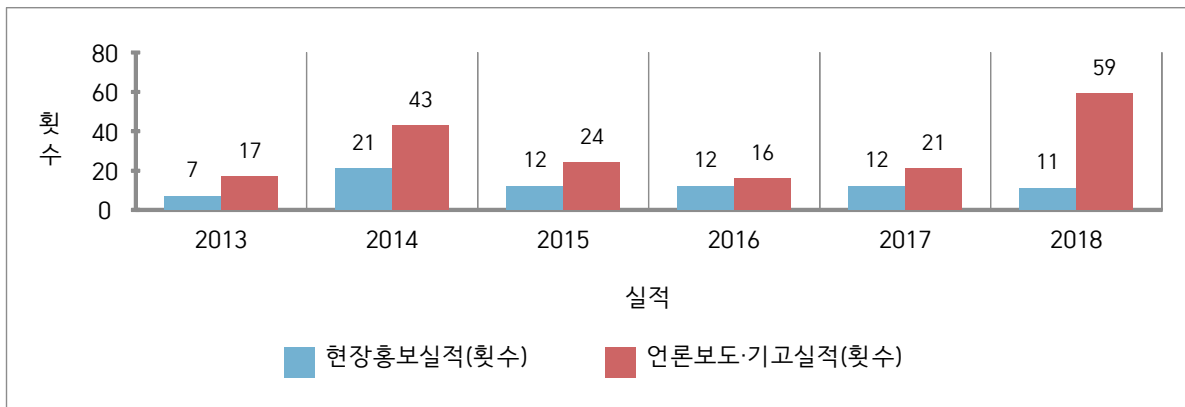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캠페인 실시			스	
21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5/31	투데이안	
22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5/31	IPN뉴스	
23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5/31	중부뉴스통신	
24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5/31	동양뉴스통신	
2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10	플러스코리아	
2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10	전북중앙신문	
27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12	투데이안	
28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12	전주일보	
29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12	IPN뉴스	
30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7/12	동양뉴스통신	
31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전라일보	
32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투데이안	
33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IPN뉴스	
34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경인투데이뉴스	
3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전주일보	
3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신아일보	
37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전북중앙신문	
38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코리아플러스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39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8/16	중부뉴스통신	
40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9/21	IPN뉴스	
41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9/21	경인투데이뉴스	
42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9/21	동양뉴스통신	
43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9/22	투데이안	
44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0/30	IPN뉴스	
4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0/30	브릿지경제신문	
4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0/30	투데이안	
47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0/30	전북도민일보	
48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0/30	동양뉴스통신	
49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0/30	전북일보	
50	군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 '총력'	안전디딤돌 앱 배포 및 설치 홍보	11/7	브릿지경제신문	
51	군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 '총력'	안전디딤돌 앱 배포 및 설치 홍보	11/7	투데이안	
52	군산시, 재난 대응 안전디딤돌 앱 설치 홍보	안전디딤돌 앱 배포 및 설치 홍보	11/7	동양뉴스통신	
53	군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 '총력'	안전디딤돌 앱 배포 및 설치 홍보	11/7	중부뉴스통신	
54	군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 '총력'	안전디딤돌 앱 배포 및 설치 홍보	11/8	경인투데이뉴스	
55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20	브릿지경제신문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56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20	IPN뉴스	
57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20	전주일보	
58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20	인터넷조은뉴스	
59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캠페인 및 안전점검 실시	11/20	전주매일신문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실적(횟수)	7	21	12	12	12	11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7	43	24	16	21	59



☞ 언론보도 및 기고실적 작년대비 65% 증가

☞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문화 운동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시장</li> <li>• 위 원:20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 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안전건설국장</li> <li>• 위 원:15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조직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재난유형담당국장

담 당 관
재난유형담당과장

^ 실무반 V

^ 주관부서 V

^ 지원부서 V

① 재난 상황 관리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 응급 복구	⑤ 에너지 기능 복구	⑥ 재난 자원 지원	⑦ 교통 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 봉사 관리	⑪ 사회 질서 유지	⑫ 수색 구조 구급 지원	⑬ 재난 수습 홍보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안전총괄과	시설담당과	에너지담당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보건사업과	자원순환과	여성가족과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공보담당관
재난관련주관부서	복지지원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건설과		건강관리과	환경정책과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생활지원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자원순환과)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안전총괄과,KT군산지사)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시설관리부서)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에너지담당관)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공보담당관)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사업과)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여성가족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군산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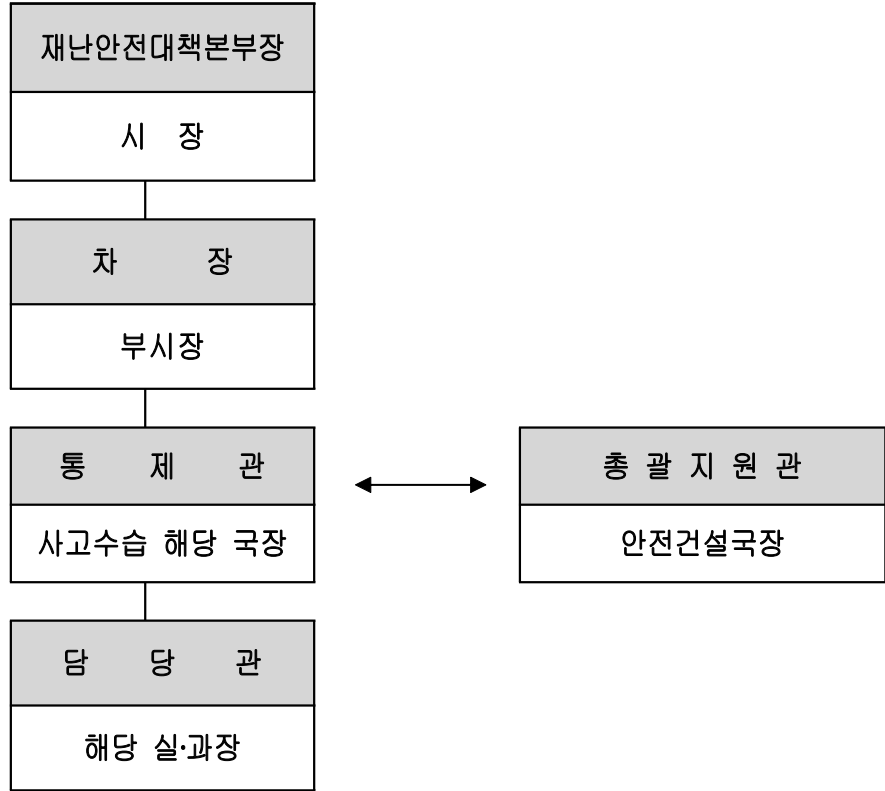
##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군산소방서, 군산해양경찰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지휘본부 편성도



13개 분야 협업부서 실무반												
재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상황관리 총괄반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재난현장 환경지원반	긴급통신 지원반	시설 점검복구반	에너지 기능복구반	재난수습 홍보반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의료·의료반	자원봉사관리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 및 구조·구급반



##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군산교육지원청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450-2714
군산의료원	○ 응급의료 운영, 환자이송 및 관리	472-500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 대피소 설치 및 구호물품 지급	280-5381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 가스탐지, 안전진단, 응급복구 및 사고 요인 조사	272-0019
군산도시가스	○ 주변지역 가스 밸브차단 조치	440-7780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고 안전대책	450-1300
군산경찰서	○ 주민소개, 사고원인 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현장통제	441-0339
군산소방서	○ 탐지, 제독, 화재진화, 사고원인조사	450-0252
군산해양경찰서	○ 바다오염(대형사고 소화액등 바다유입)	539-2242
전북일보	○ 피해 최소화 및 응급복구 재난방송	468-7006
군산자원봉사단체	○ 피해주민 돌봄 등 지원	451-1365
KT군산지사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	462-0060
육군제9585부대	○ 인력 및 장비 지원	464-9113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6.1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자연재난·인적재난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5.13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005.02.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군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5.05.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04.6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7.11.30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지진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4.04.28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조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4.07.14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0.08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1.02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03.02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교통 수송	군산항	부두시설 (31선석)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07.11.23	관리기관 정기점검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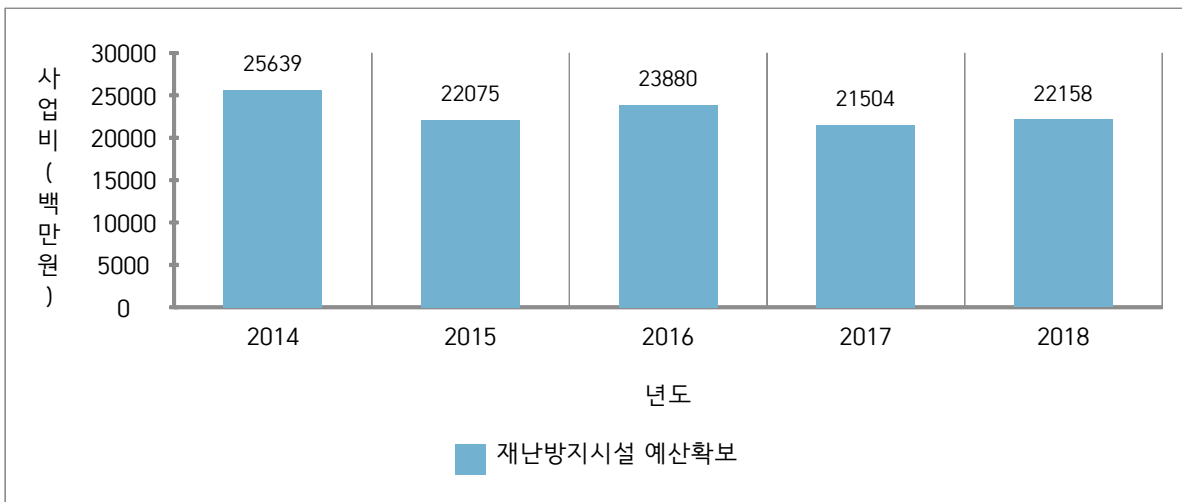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예산비) (백만원)	정비목적
경포천 재해 예방사업	수송동~경장동	하천정비 L=2.25km	'06~'18년	'18년 43,968 914	도심지 침수 사전예방
미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룡동~옥구 수산리	하천정비 L=4.7km	'09~'19년	'18년 43,653 8,539	침수·이수적 안전하천조성
윤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송동~희현 월연리	하천정비 L=6.3km	'16~'23년	'18년 115,692 5,866	도심저지대 침수예방
구암 수하천 정비사업	조촌동~구암동	하천정비 L=1.25km	'17~'20년	'18년 14,291 2,200	도심저지대 침수예방
운방 수하천 정비사업	서수면 관원리~마룡리	하천정비 L=0.60km	'18~'21년	'18년 1,700 320	침수·이수적 안전하천조성
군장산단 유수지 정비사업	비응도동	누수제방정비 L=1.0km	'16~'18년	'18년 5,765 2,565	집중호우시 침수예방
동백대교 붕괴 위험지역정비사업	해망동	사면정비 V=3,280㎡	'16~'18년	'18년 1,944 360	붕괴원형 지역원형
해망3 붕괴위험 지역정비	해망동	사면정비 V=8,280㎡	'16~'18년	'18년 1,500 1,400	붕괴원형 지역원형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25,639	22,075	23,880	21,504	22,158



- ☞ 2012. 8월 집중호우 이후 피해복구사업 대상지가 증가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등 지속적 사업시행
- ☞ 재난방지시설 예산 작년대비 3%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

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m	천매	box	kl
총계	760	6.87	0	1.62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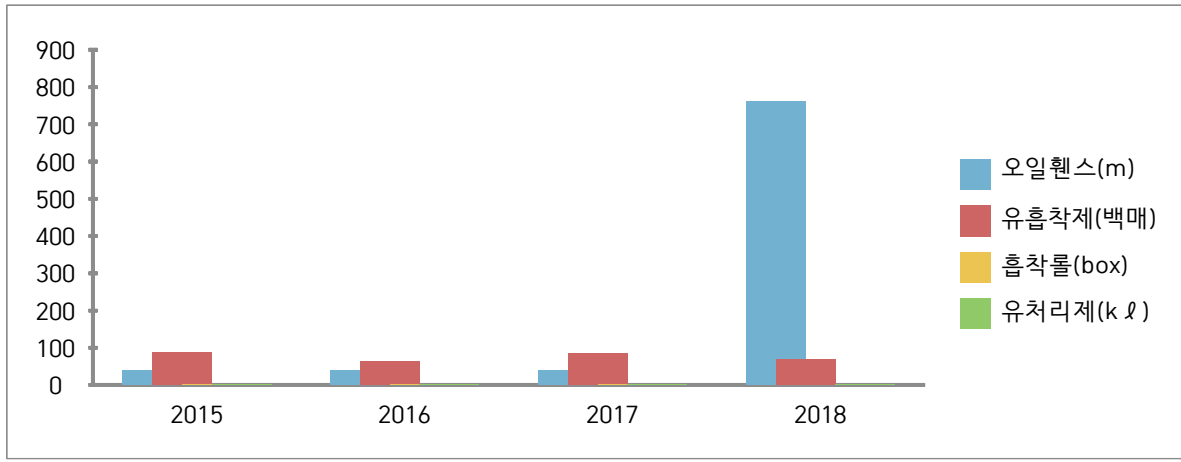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176	385	816	17	4,035	2
병원	175	364	776	15	4,035	2
보건소	1	21	40	2	0	0

[수용시설]

구분	합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91	14,515	44	9,495	0	0	24	646	12	1,284	11	3,09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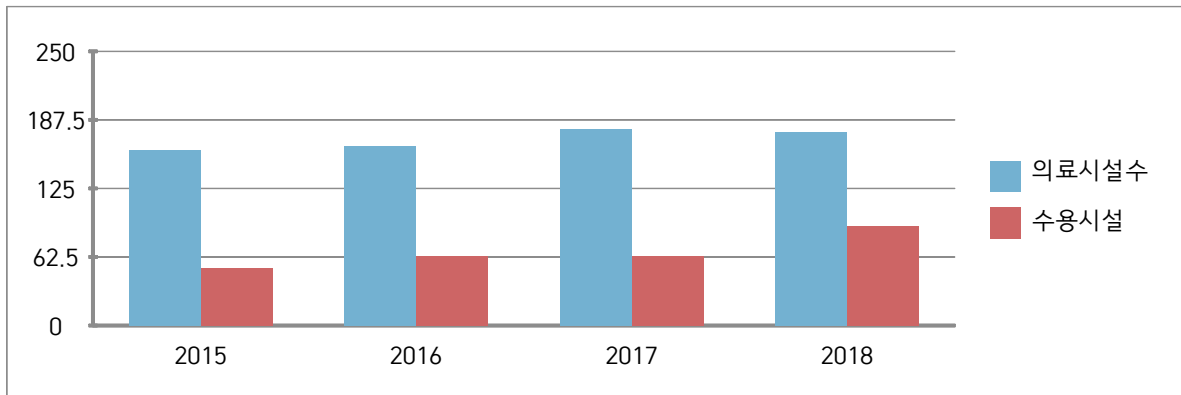
방재물자 종류별	2015	2016	2017	2018
오일웬스(m)	40	40	40	760
유흡착제(백매)	88	64	85	68.7
흡착물(box)	1	1	1	0
유처리제(kl)	1.5	1.6	1.62	1.62



☞ 방재물자 중 흡착물 소진(유흡착제 등 대체)과 수질오염 관리를 위한 오일웬스 증가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의료시설수		160	164	179	176
수용시설	개소	52	63	63	91
	수용인원	13,436	13,335	10,765	14,515



☞ 의료시설은 소량 감소하였으나 수용시설은 정비 등 재지정으로 인한 개소 및 수용인원 증가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구 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총 계	4	2	1	1	0

◆ 복구장비

구 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저	덤프	기타
총 계	5	-	1	-	1	3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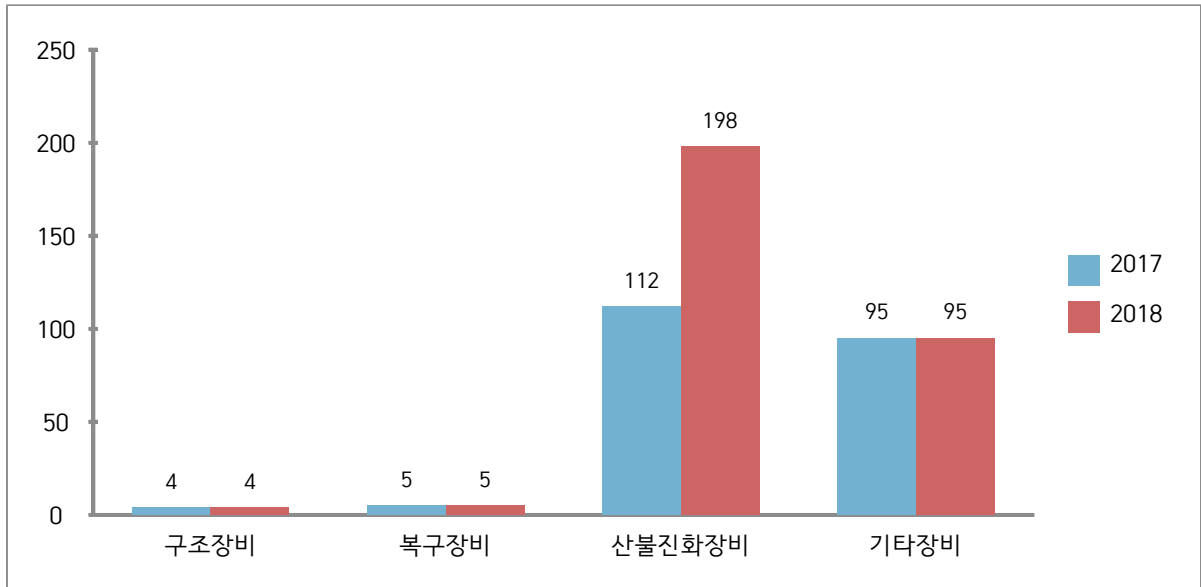
구 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동력톱
총 계	198	0	1	4	15	171	7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퓨터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기타
총계	95	1	-	33	3	-	-	58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구조장비	4	4	4
복구장비	5	5	5
산불진화장비	112	112	198
기타장비	95	95	95



☞ 산불진화장비는 일부 증가했으며, 기타장비는 변동없음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732	177	233	111	153	17	18	23	-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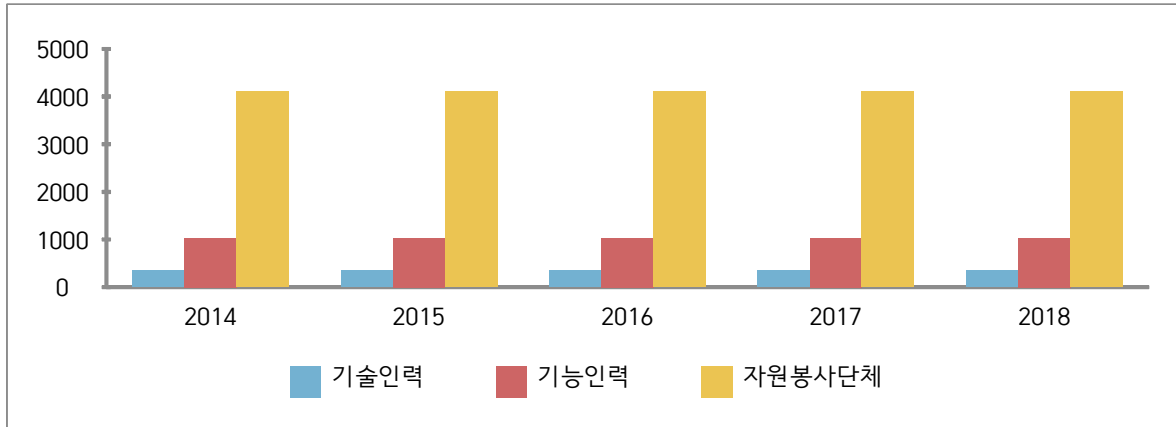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인원	1,441	948	51	34	-	-	408	-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 소방대	산악 구급대	수중 구급대	아마추어 무선 봉사대	기타	적십자 봉사대	자율 방범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4,241	566	-	-	-	-	250	546	37	77	365	24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술인력	359	359	359	359	732
기능인력	1,038	1,038	1,038	1,038	1,141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4,103	4,103	4,103	4,103	4,241



☞ 기술·기능 인력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특이한 변동사항 없음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2018.10.17. ~10.30(13일간)	행정안전부	“나”	
재난관리평가	‘18.12.~ ‘19.2. (3달간)	행정안전부	우수	

☞ 지역안전도진단시 ‘17년 4등급에서 ‘18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  
 재난관리평가지 일부 항목 조정으로 우수로 상향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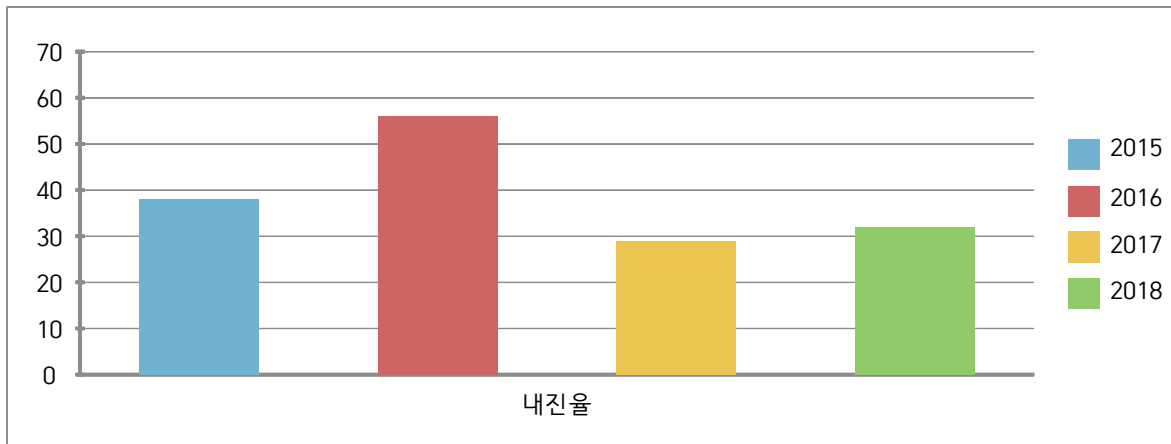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8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합 계	301	95	-	-	32
공공건축물	194	47	-	-	24
교 량	59	29	-	-	49
터 널	3	3	-	-	100
폐수종말처리장	2	1	-	-	50
수도시설	12	6	-	-	50
어항시설	20	0	-	-	0
매립시설	1	0	-	-	0
공공하수 처리시설	10	9	-	-	90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내진율	38	56	29	32



- ☞ 예산부족 및 지진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 저조
- ☞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 500㎡이상 ⇒ 200㎡이상 강화에 따른 대상 시설물 증가에 따른 내진율이 저조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여	부	여	
종합상황실	여	부	여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옥도면	-	-	-	-	-	26
소룡동	-	-	-	-	-	3
해신동	-	-	-	-	-	2
중앙동	-	-	-	-	-	2
장미동	-	-	-	-	-	1
구암동	-	-	-	-	-	1
경암동	-	-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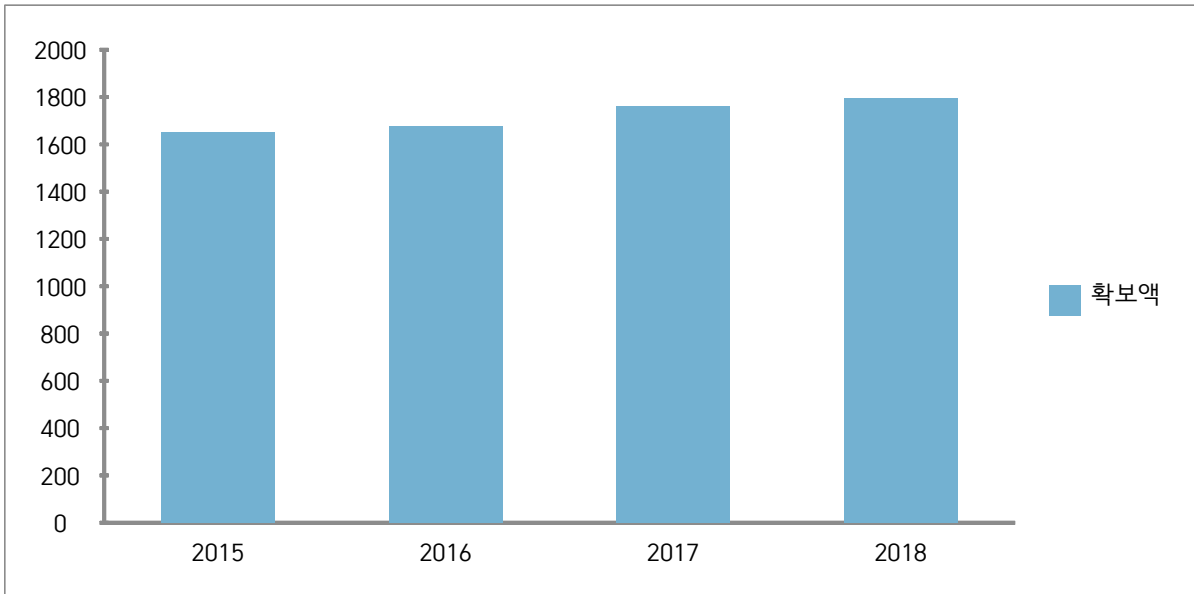
※ 지진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 표지판 156개소 운영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561백만원	1,795백만원	1,795백만원	100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5	2016	2017	2018
확보액		1,651	1,675	1,764	1,795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243	560	637	283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57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33	126	116	10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7			



- ☞ 법정적립기준에 따라 기금확보
- ☞ 2011년도는 시 재정상 미확보 되어, 2015년에 추가 계상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제·개정일자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재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8.7.	풍수해재난 대응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7.	지진재난 대응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7.	대형화산폭발에 따른 주민대피 등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7.	가뭄재난 대응
댐붕괴 매뉴얼		2018.7.	댐붕괴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2018.7.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보통신과	2018.7.	정보통신 불능에 따른 대응
전력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에너지담당관	2018.7.	전력 차단 등에 따른 대응
산불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산림복지과	2018.7.	산불재난 대응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수산진흥과	2018.7.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방제
연근해어선 사고현장조치	항만해양과	2018.7.	연근해어선 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제·개정일자	매뉴얼 주요내용
매뉴얼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산진흥과	2018.7.	적조에 따른 현장조치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업축산과	2018.7.	가축질병 예방 및 대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정책과	2018.7.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7.	대규모 수질오염 방제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현장조치매뉴얼	건설과	2018.7.	도로터널사고 수습
저수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7.	저수지 붕괴 대응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조치매뉴얼	주택행정과 건축경관과	2018.7.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응
육상화물운송분야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교통행정과	2018.7.	육상화물운송 총파업에 따른 대처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도과	2018.7.	식용수 오염에 따른 식수 공급체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산업혁신과	2018.7.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8.7.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7.	보건의료 총 파업에 따른 의료 수급체계 구축
청사위기관리 대응매뉴얼(자체)	행정지원과	2018.7.	군산시 청사 화재, 붕괴 등 대응
가스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너지담당관	2018.7.	가스 공급 등 위기상황 대응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매뉴얼(자체)	문화예술과	2018.7.	문화재 화재, 풍수해에 따른 대응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교통행정과	2018.7.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습
군산시 사회재난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안전총괄과	2018.7.	사회재난 위기관리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매뉴얼		2018.7.	재난종합상황실 매뉴얼
군산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매뉴얼		2018.7.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행동매뉴얼
산사태 예방 대응 행동매뉴얼	산림녹지과	2018.7.	풍수해 대비 산사태 예방
침수예방 행동매뉴얼	하수과	2018.7.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제·개정일자	매뉴얼 주요내용
공연장 안전매뉴얼	예술의전당	2018.7.	예술의전당 자위소방대
위기상황 안전매뉴얼	시립도서관	2018.7.	시립도서관 자위소방대
위기상황 매뉴얼	환경정책과	2018.7.	철새조망대 자위소방대
위기 상황 매뉴얼	인재양성과	2018.7.	평생교육원 자위소방대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군산시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2018.7.	현행화 및 NDMS 탑재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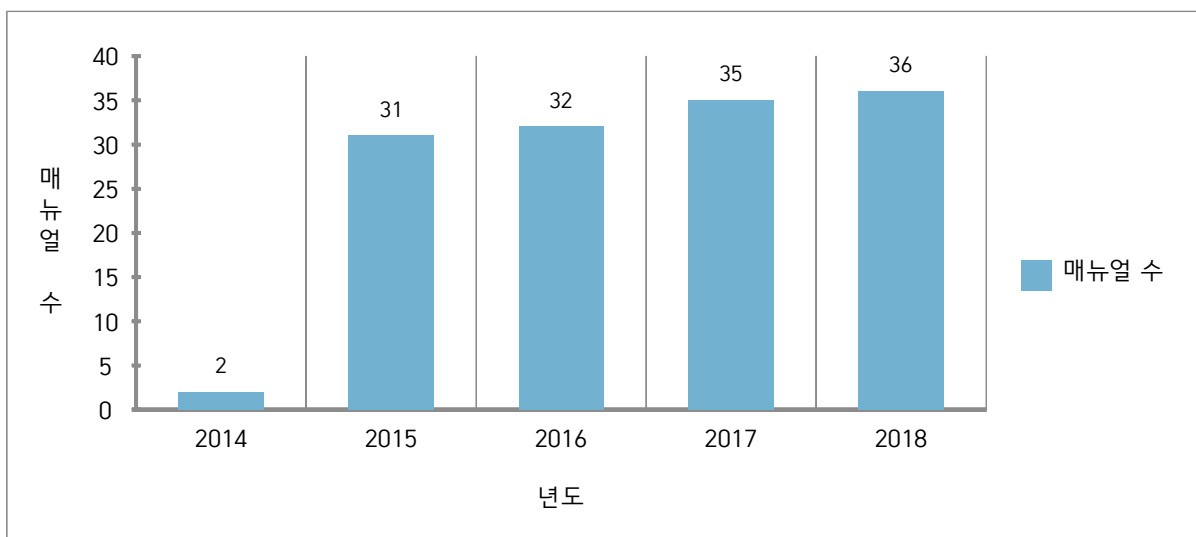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저수지 붕괴	'18. 4. 24.	2018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 토론기반 훈련	
유해화학 물질 유출사고	'18. 4. 24.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명칭 변경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동 반경 적용	
지진	'18. 5. 9.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 및 화재 훈련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사항	
감염병	'18. 7. 11.	전라북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 방역대책반 구성원 명시	
대규모 수질오염	'18. 8. 22.	2018 새만금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 유관기관(새만금개발청) 임무 명시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명칭 변경 -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분석 결과에 따라 해제	
댐붕괴	'18. 9. 14.	대청댐 비상대처계획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명칭 변경 - 비상대처계획(EAP) 발령에 따른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주민대피 도상훈련	주민대피	
전력	'18. 9. 14.	2018년도 재난대비 (전력분야) 훈련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명칭 변경 - 유관기관 역할 내용 수정	
식용수	'18. 10. 8.	18년 식용수 분야 사고대응 도상훈련	- 토론기반 훈련	
가축질병	'18. 10. 18.	2018 가축전염병(AI·구제역) 발생 대응 토론기반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 지대본 실무반 일부 문구 수정	
대규모 해양오염	'18. 10. 18.	2018 해안방제 훈련	- 자원봉사자 안전 교육시 사진 교육자료 활용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활용	
산불	'18. 10. 19.	2018 산불진화 합동훈련	- 긴급재난문자 발송 반영 - 산불초기진화시 발화 의심지 통제 구역 설정 - 산불전문 조사반 투입 규정 명시	
가뭄	'18. 10. 24.	가뭄대응 토론기반훈련	- 국가 가뭄 예경보 반영 - 세부지원내용 명시(물탱크 생수 등)	
정보통신	'18. 10. 26.	재난현장 정보통신 시설 지원 훈련	- 토론기반 훈련	
연근해어선	'18. 10. 29.	연근해어선 사고현장조치 대응 훈련	- 시도해역 안전조업 등 안내방송 실시 - 위기경보가 없는 돌발 상황 시 초동조치 시행과 상부기관 보고	
다중밀집 시설 대형사고	'18. 10. 3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응 훈련	- 긴급정밀진단 시 유관기관(건축사 협회 등)합동 점검 - 임시주거시설 설정 및 장기주거 시설 반영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18. 10. 3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토론기반훈련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시 현장이동 임무추가	
청사위기 관리	'18. 10. 30.	본청 합동 소방훈련	- 토론기반 훈련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보건의료	'18. 11. 1.	의료기관 집단거부대응 훈련	- 군산시 재난관리체계도 참여관 추가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추가 - 비상대응 단계의 대응지침 내용 추가	
다중밀집 시설 대형화재	'18. 11. 9.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련	- 유관기관 및 부서 재난대응체계 가동 준비 - 크로샷, CBS 재난문자 등 활용 주민고지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명칭 변경	
풍수해	'18. 11. 15.	폭설 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 토론기반 훈련	
가스	'18. 11. 15.	천연가스 공급 중단 대비 위기대응 실행기반 훈련	- 토론기반 훈련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 수	2	31	32	35	36



☞ 자체 매뉴얼 증가 (인재양성과-평생교육원 위기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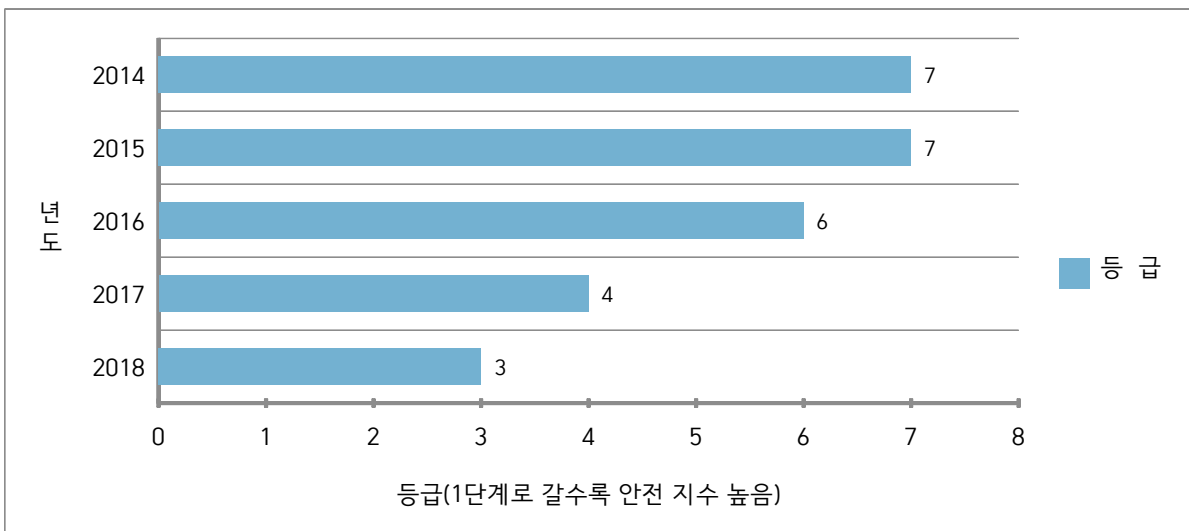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415	0.969	0.733	3(나)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 급	7	7	6	4	3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지역안전도	0.40 미만	0.40~0.45	0.45~0.50	0.50~0.55	0.55~0.60	0.60~0.65	0.65~0.70	0.70~0.75	0.75~0.80	0.80 이상
그 룹	그룹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라'		그룹 '마'	



☞ 2012년 집중호우 이후 자연재해 피해 이력 및 잠재되어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 제거와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으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1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개선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 발생시, 산불·화학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시 안내 방송하는 재난 예·경보 방송시설을 18개 확충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군산시 안전총괄과 (담당자 : 오재환, 전화 : 063)454-384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